

◇주요내용

가.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(제3조)

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재의 활성화·유치, 분쟁해결시설의 설치·운영 및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.

나.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(제4조)

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분쟁해결시설의 설치,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 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.

다.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(제6조 및 제8조)

- 1) 법무부장관은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.
- 2) 법무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·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·훈련,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,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.

라.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(제7조)

- 1)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을 중재지 또는 심리장소 등으로 하는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중재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.
- 2) 법무부장관은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재산업 전문 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, 해외설명회·부대행사의 개최 및 해외 중재기관과의 협력 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

대통령권한대행
국무총리 황 교 안 인

2016년 12월 27일

국무총리 황 교 안
국무위원
행정자치부 장관
홍 윤 식
(법무부 소관)

●법률 제14472호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방법원 본원”을 각각 “회생법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방법원”을 “회생법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“지방법원 본원”을 각각 “회생법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지방법원”을 “회생법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서울중앙지방법원”을 “서울회생법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지방법원 본원”을 “회생법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중 “지방법원본원”을 각각 “회생법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지방법원본원”을 각각 “회생법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해당지방법원”을 “해당 회생법원”으로, “지방법원본원”을 “회생법원”으로 한다.

제15조 중 “지방법원”을 “회생법원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방법원장”을 “회생법원장”으로 한다.

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) ① 회생법원장은 관리위원회를 통한 관리·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을 매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·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하며, 그 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0조제1항 전단 중 “회생법원”을 “회생계속법원”으로, “지방법원”을 “회생법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회생법원”을 “회생계속법원”으로 한다.

제105조제3항, 제107조제3항, 제116조제4항, 제171조제2항, 제178조, 제247조제3항 단서, 같은 조 제4항, 제255조제3항 단서, 제264조제2항, 제265조제3항 후단, 제266조제3항, 제271조제4항, 제272조제3항, 제273조제1항 및 제274조제3항 중 “회생법원”을 각각 “회생계속법원”으로 한다.

제353조제4항 중 “파산법원”을 “파산계속법원”으로, “지방법원”을 “회생법원”으로 한다.

제396조제3항, 제463조제2항, 제470조, 제536조제1항 및 제575조제1항중 “파산법원”을 각각 “파산계속법원”으로 한다.

제605조제1항 후단 중 “개인회생법원”을 “개인회생계속법원”으로, “지방법원”을 “회생법원”으로 한다.

제609조 중 “개인회생법원”을 “개인회생계속법원”으로 한다.

제630조 본문 및 단서 중 “서울중앙지방법원”을 각각 “서울회생법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방법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은 이 법에 따른 회생법원으로, 관할 지방법원장은 이 법에 따른 회생법원장으로 본다.

◇개정이유

「법원조직법」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회생법원에서 회생사건, 파산사건, 개인회생사건 또는 국제도산사건을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.

◇주요내용

- 가. 회생법원의 신설에 따라 종전 ‘지방법원본원’을 ‘회생법원’으로 대체함(제3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).
- 나. 회생법원에 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함(제15조).
- 다.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회생계속법원으로 정의함(제60조제1항).
- 라.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파산계속법원으로 정의함(제353조제4항).
- 마.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개인회생계속법원으로 정의함(제605조제1항).
- 바.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에 관한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의 전속관할로 함(제630조).

<법제처 제공>